

부산대학교 「PNU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FAQ('26.8.)

[학생연구자(대학원생)]

[지원자격 및 대상 기준]

Q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무엇이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학생인건비 체계를 보완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이며, 이중 월 기준금액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에 미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됩니다.

Q2. 전일제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2. 지도교수 확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신청하려는 학생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전업 학생(Full-time)**이고, 건강보험상 직장미가입자인 경우 전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병원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라면 신청불가합니다.

Q3.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지원요건이 맞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졸업월이어도 신청가능할까요?

A3. 네,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를 적용받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급이 이뤄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 내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원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Q4. 비이공계열 학과 대학원생이나 이공계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가능할까요?

A4. 아니요, 지원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공계열 전일제 대학원생'이며, **해당 대학원생의 소속 학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이공계열 학과 대학원생임에도 지도교수님이 비이공계열이거나, 비이공계열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경우는 다른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합니다.

Q5. 신청하려는 학생이 현재 **타대학 연구과제에만** 참여하고 교내에서는 참여 중인 연구과제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A5. **타대학 연구과제에만 참여하고 있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가 있다면 해당 부족분만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단 과제관리 시스템(ERP)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타대학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음과 지급될 학생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6. **기초의학계열** 대학원생이나, 면허증 미소지자입니다. 지원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지도교수 및 단과대학 확인까지 필요한가요?

A6. 기초의학계열 전문 면허증 미소지자 파악 시 지도교수와 단과대학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담기관 측에서 제공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필수 사항**이오니,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Q7.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7. **신청 시기는 학기에 1회**이며, 개강 전(2월, 8월) 신청공고 후 양식 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여부(Y/N)**'에 '**Y**'로 체크하시어 "**소속 학과**"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학과에서 취합 후 소속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해주시면 산학협력단이 단과대학으로부터 접수하는 방식으로 전체 신청건이 집계됩니다.

Q8. 26-2학기부터 '**학기당 1회 신청**'으로 바뀌었는데, **1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시 매달** 해야할 일은 없나요?

A8. 네, 신청주기 및 운영방식이 학기당 1회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 학기당 1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자격득실상 변동(직장가입)** 또는 **학적상태가 변경(휴학, 제적 등)**되는 경우 지원 자격상실되므로 즉시 산학협력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달 학생에 대한 학생인건비 총합이 바뀌는 경우 지원금 또한 변경되며, **지원금액 변동에 대한 연구 참여확약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9. 정기 신청 당시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여부를 N로 제출했었으나**, 학기 시작 후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어 부합하게 되었다면 **중도 신청** 가능한가요?

A9. 네, 중도 신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지원자의 요건 검토와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중도 신청의 경우 해당 월 10일까지** 신청해주셔야 하며, 신청 양식 기재 후 산학협력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예외 상황]

Q10. BK21사업에서 '우수 대학원생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평균으로 기준금액 미만이면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0. BK21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의 경우(산학협력단 회계) 기준 금액 이상이 되어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나, BK21 해외연수비(대학본부회계)는 학생인건비가 아니므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외연수비를 제외하고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BK21사업의 참여인력이나, 장학금 미지급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 **BK21사업 중 장학조교(TA), 연구조교(RA)의 경우 대학본부회계로 관리되므로 역시 부족분 계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Q11. 현재 생계를 위해 주말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학생입니다. 저는 '전일제' 범위에서 제외되는가요?

A11. 「근로기준법」제18조 내용을 기준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단시간 근로'로 인정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서식 3] 지도교수 확인서(비전일제)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주시면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해드릴 예정입니다.

Q12. 현재 휴학생인데,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2. 불가합니다. 학생인건비와 동일하게 재학생(수료후연구생 포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수료후연구생이란 수료후 "연구등록을 마친" 학생을 의미합니다.

Q13. 현재 석사 수료후연구생입니다. 지도교수님의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받고있는 인건비는 없고, 교수님의 지자체 용역 과제만 참여하고 월 70만원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활동형으로 신청가능할까요?

A13. 아니요. 지원불가합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며,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내용을 따르며, 해당 법령의 제40조 10항을 살펴봐주십시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합은 소속 기관 내에서 최소 석사 22만원, 박사 30만원 이상이 되게끔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용역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려금만으로 금액을 충족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부족분 계산시 10만원) 현시점에서는 지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도교수 및 연구실]

[주요 운영사항]

Q14. 26-2학기부터 기존 신청방식과 달라졌는데, 어떤 점이 주로 달라졌을까요?

A14.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주기 변경(매월 → 학기에 1번)**, ②**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지원유형 선택 → 담당자 검토 후 지원유형 결정**입니다. 1차 연도 운영 후 실시하였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신청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간소화를 위해 운영 방식을 조정하였으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Q15.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A15. 연구자 개인에게 패널티는 아직 없으나, 기준금액 미충족 학생이 계속 발생할 경우 **본 사업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점검시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예산에 부정적 영향(예산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주시어 **교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관리**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Q16. '기준금액'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지도학생마다 참여 중인 연구활동이 다른데 해당 기준으로 일괄 맞추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A16. '기준금액'은 학생의 연구활동량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며, **일괄 강제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도하는 학생별 연구활동 내용에 따라 지급계획을 세워주시고, 기준금액 대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신청 주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의 안정적인 연구전념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이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Q17.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받은 뒤 인건비 추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A17. **아니오, 불가**합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의 경우 매월 해당 학생이 지급받는 학생인건비 합을 기준으로 부족분이 산출되어 지급되므로, 만약 학생인건비 지급 계획이 추가되는 경우 **월 최저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추후 반납을 요구**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증빙서류 **[서식1]** 내용과도 같습니다.

※ 만약 신규과제 수주로 인해 해당 학생에게 최저기준금액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시 고자 하는 경우 지원받았던 장려금 전액 선반납 후 진행부탁드립니다.

Q18. 학생인건비 혁신법 최소 계상률 10%, 기관계정 균등지급 20%,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월최저기준금액 등 학생인건비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합니다. 해당 사업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A18.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모든 대학원생에게 동일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몰입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인건비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과제 상황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 있는 학생인건비를 보완하고, 지급 수준의 편차를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Q19. 연구 참여도가 낮은 학생까지 **기준금액을 맞춰줘야 한다면**, 오히려 열심히 하는 학생의 불만과 연구실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19. 최저 기준금액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구성과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기준**입니다. 동일 금액으로 모든 지도학생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본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즉, 부족분은 본 사업에서 지원가능하오니, 지도학생의 연구기여도를 고려하시어 차등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연구활동 범위]

Q20. **‘연구활동’의 범위와**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요?

A20. 본 사업에서의 **‘연구활동’**이란 원칙적으로 ①통합관리제도(기관계정, 연구책임자계정)를 통해 학생인건비를 지원받거나 ②비통합과제(정부지자체·민간용역 등 학생인건비 비징수 과제)를 통해 학생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인건비 미지급 참여의 경우 연구활동으로 판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BK21사업의 경우** 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BK21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서 참여만 하는 기준금액 미만 대학원생은 지원가능합니다. 그밖에 ③개인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④신임교원 연구실 소속 등 자세한 내용은 운영계획(안)의 [별표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21. 학생의 지도교수님이 임용되지 얼마되지 않아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으나, 학생은 **지도교수가 아닌 타교수님 연구과제에 참여** 중이고,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A21. 네,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계산의 경우 **지도교수님이 아닌 학생이 받는 총인건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도교수님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으시더라도 신청하려는 대학원생이 타 교수님의 연구과제에 참여 중이고,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Q22. 국가 R&D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신진교수로 임용되어 **교내 지원사업 과제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과제에 참여 중인 대학원생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A22. 아니오. 기본적으로 R&D, 용역과제 등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관리 중인 연구과제에 한해 참여여부를 지원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교내 지원사업은 대부분 대학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만약 ①임용 3년 이내이고, 신규 또는 후속으로 교외 연구과제를 준비 중이며, ②지도학생이 참여 중인 연구과제 및 이력이 없다면 '신임교원 지원형'으로 지원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Q23. 현재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을 세우려 했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학위논문형**으로 지원가능할까요?

A12. 해당 학생이 **다음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①현재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 학위논문 연구만 수행 중이고, ②현재 학위과정 중 연구과제 참여이력(인건비 지급이력)이 있으며, ③지도교수의 확인 및 추천이 가능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학위논문형의 경우 **최초 지원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24. 혹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어느 계정**에서 지원금이 지출되는 건가요?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에서 지출이 되는 건 아닌가요?

A1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 계좌로 지출이 되는 구조가 아닌, **기관계정을 “통해서”** 지출됩니다. 다시 말해, 기관계정에 있는 교수님의 인건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비**가 기관계정에 이미 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해서” 지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